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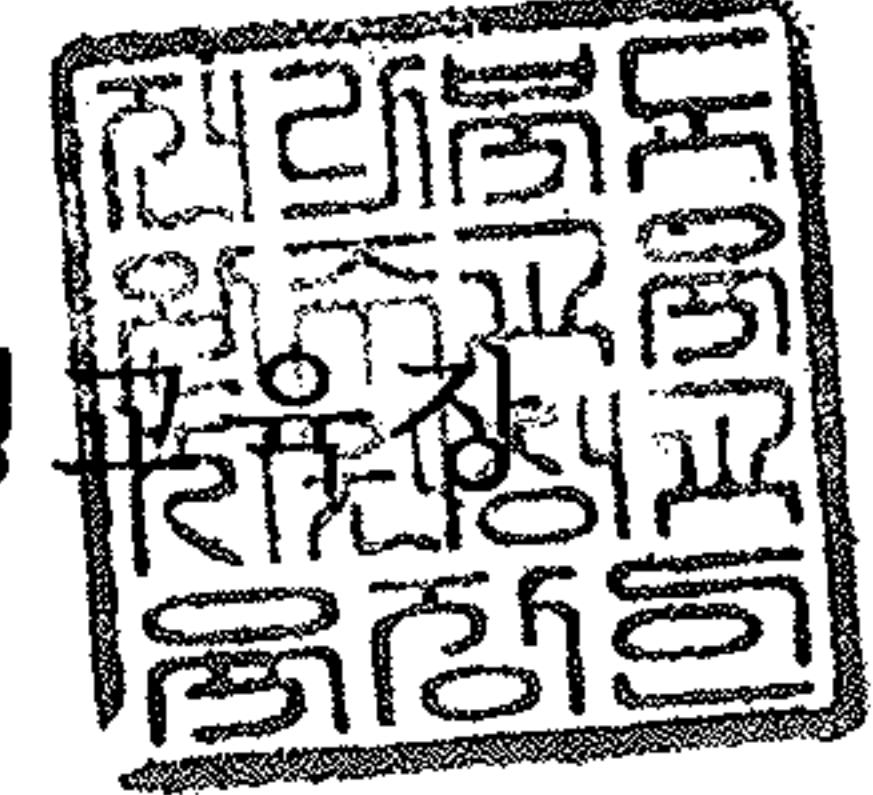
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고시 제2014-132호

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예정지 설정 · 고시

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예정부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설정 · 고시합니다.

2014년 11월 10일

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



1.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 설정 일자 : 2014년 11월 10일

2.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 설정 학교 현황

학교명	학교예정소재지	정화구역 면적(m ²)	개교일	비 고
한별유치원(가칭)	완주군 혁신도시개발사업지 내 12-1	184,372	2015년 3월	유치원 개원
들꽃유치원(가칭)	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120-1	148,098		

3.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 지역

가. 절대정화구역 :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

나. 상대정화구역 :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
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

※ 단,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
시점에 절대정화구역 설정

※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
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,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정화구역 해당

4.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 :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
제6조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

5.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:

(인터넷주소 http://211.236.96.91/egis/outer/wan/jibun_search.html)에서 확인

6. 기타 문의사항 :

-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(전화번호 : 063-270-7617)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